

12. 標準設計圖書等의 運營에 관한 規則中 改正令

建設交通部令 第52號 1996. 2. 9

표준설계도서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중 “건축사법 제4조 및 건축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를 “건축법 제19조 제4항”으로, “특수공법”을 “특수한 공법”으로, “인정·보급 및 관리”를 “작성·인정·보급 및 관리”로 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설계도서”라 함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작성한 설계도서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나 대한주택공사의 장이 작성한 설계도서로서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것을 말한다.

2.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

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설계도서를 말한다.

가. 건축물의 구조기준등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기 곤란한 구조의 건축물(건축물의 일부를 포함한다)에 관한 것.

나. 조립식공법으로서 공사비의 절감, 공사기간의 단축 또는 대량건설에 기여할 수 있는 공법에 관한 것.

제2조 제1항 본문중 “영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를 “표준설계도서”로 하고, 동조 제2항 본문중 “영 제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설계도서등의”를 “표준설계도서등의”로,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며, 동항 제3호중 “특수공법”을 “특수한 공법”으로 하고, 동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4항 내지 제6항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

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기본설계도서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군사기밀에 관련된 군사시설에 대한 표준설계도서등에 관한 인정신청서인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에 설치된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표준설계도서등의 공고) 건설교통부장관은 표준설계도서등을 작성·인정·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할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제1항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시·도지사”로 한다.

제7조 제1항중 “매분기 다음 달 5일까지”를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그 다음달 15일까지”로 하고, 동조 제2항중 “매반기 다음 달 15일까지”를 “매년 1월 15일까지”로 하며, 동조 제3항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매반기 다음 달 20일까지”를 “매년 1월 20일까지”로 한다.

제8조 본문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설계도서등의 작성자로부터 보완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제2조 제4항의 규정은 제2항의 보완사항의 심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표준설계도서등이 목적에 부합되지 아니하게 사용되거나 활용도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표준설계도서등의 작성자와 협의하여 이를 폐지할 수 있다.

제3조·제5조 및 제6조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특수공법”을 각각 “특수한 공법”으로,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건설부”를 “건설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중 “특수공법”을 “특수한 공법”으로, “건설부공고”를 “건설교통부공고”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중 “특수공법”을 “특수한 공법”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의 표준설계도서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표준설계도서등은 이 규칙에 의한 표준설계도서등으로 본다.

③(표준설계도서등의 인정신청에 관한 경

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인정신청중에 있는 표준설계도서등은 이 규칙에 의하여 인정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건축법(1995. 1. 5, 법률 제4919호) 및 건축사법(1995. 1. 5, 법률 제4918호)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법 및 건축사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이 규칙의 근거규정 및 관련조항을 정비하며,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 가. 표준설계도서는 중앙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되, 군사시설에 대한 표준설계도서는 국방부에 설치된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제2조 제3항).
- 나. 표준설계도서의 활용실적보고를 연 2회 내지 4회에서 연 1회 내지 2회로 줄임(제7조).

〈건설교통부 제공〉

당신의 집이라면 부실공사 하겠습니까?